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49호 (2015년 9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감도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시대” 개막
- 서부 대개발 정책개발 구체화 시동
- 지방도 규제완화 조례 개정으로 고층민원 해소
- 의령 동동 택지개발지구 올 연말 분양
- 양산 석계2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 경남도, 행복주택 첫 삽 뜬다
- 경남도-한국도로공사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경남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전국최다 우수사례 선정
- 경남도, 건축 재능기부로 희망을 더한다
- 새 우편번호 건물번호판에서 확인하세요
- 거제, 학동케이블카 착공

■ 지식정보 11

- 8월부터 2년간 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 제한
-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준 3년 연장
- 바다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방식으로 일원화
-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회신 바로 잡는다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 소규모로 빠르게 추진된다.
- 국토부, 건축물정보 활용 신산업 창출에 불을 지핀다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1

■ 신기술 정보 26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28

■ 기술인 나눔 정보 30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시대” 개막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주 혁신도시의 LH공사 신사옥 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8일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와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하승철 진주시 부시장 등 주요내빈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기념행사 개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LH공사 신사옥 지하1층, 지상1,3,5층 등 총 7,609.59㎡(전체임차면적)를 임차하여 새 사무실을 꾸리게 되며, 지난 6월22일 이전을 완료하여 직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앞으로 저작권 위원회가 경남의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창작자가 창조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은 물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경남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경남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은 경남지역의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직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그밖에도 지역산업 및 상권과 연계된 생산유발 효과 등 도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경남진주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3만 1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2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서부경남의 성장동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추어 경상남도에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에 불편이 없도록 35개 이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정서적 두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저작권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핑거프린팅 아트와 그동안 위원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포토월 전시를 선보였다. 또한 경남 인재를 포함하여 선발된 청년인턴 8명이 직접 제작한 UCC 상영과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상징하는 전통한지 등(燈) 전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 통합하여 저작권 업무의 전문화·체계화함으로서 국내의 문화산업과 기술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경남의 문화산업 발전과 문화컨텐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혁신도시팀당
(055)211-6043

서부 대개발 정책개발 구체화 시동

▶ 경남도, 11일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 회의 열어

경남도는 11일 서부권개발본부 회의실에서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구식 경남도서부부지사, 성낙주 교수자문위원회 위원장(경상대학교 석좌교수), 오태완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한 5개 분과위원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서부대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5개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고, 경남도의 구체적인 서부대개발 계획과 경남미래50년 사업계획에 대해 자료 확보 후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서부대개발에 도민들의 참여와 함께 경남미래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발굴하기 위해 “서부대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각 분과위원장들은 서부대개발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안) 제시, 서부경남 발전에 적합한 정책과 산업 등을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서부권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최구식 경남도서부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 리모델링 공사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서부대개발의 핵심과제인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수와 혁신도시의 활성화, 향노화산업의 활성화, 항공산업의 정책적 지원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서부대개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교수

자문위원회가 서부대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

성낙주 자문위원장은 “바이오 향노화산업의 정책적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답사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연구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서부대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당면한 항공 MRO사업의 유치에 위한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여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으로 교수자문위원회는 5개분과위원회에서 소관별 정책과제를 검토한 후 발전방안과 대도민 홍보를 위한 대안을 금년 중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서부 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정책개발에 대한 조언에 대해 각 부서에 전파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서부청사담당
(055)211-6013

경남도, 지방도 규제 완화 조례 개정으로 고충민원 해소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점용료 면제

경남도는 도로와 관련된 현행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2건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5월 개정 조례(안)을 마련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7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의 경우,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의 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을 일부 완화하고 도로종단기울기의 초과기준도 현행 “평지 7%, 산지 10%”에서 “평지 6%, 산지 9%”로 개정하는 한편, 변속 부가차로와 사업부지가 만나는 도로 모서리의 최소 곡선 반지름을 “15미터”에서 “12미터”로 완화하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계획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고충민원 해결 효과는 물론, 도로와 인접한 주유소, 숙박시설 등의 신규 인허가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조례 공포를 앞두고 조례 개정 내용을 시군에 미리 알려 주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행정담당
(055)211-2952

“의령 동동 택지개발지구 을 연말 분양 된다 ”

▶ 경남도,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 승인

경남도는 의령 동동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에 대하여 을 연말 분양을 목표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택지개발 1단계 사업은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00번지 일원에 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하여 248,750㎡ 면적의 신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말이면 의령의 깨끗한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주택지로 거듭나며, 택지분양은 15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동동지구는 인근에 고속도로IC가 있고 의령읍 시가지와 맞닿아 있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하며 공원, 녹지를 포함하는 공공시설용지가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등 도시형 친환경주택단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인구유입을 통해 의령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동지구 앞을 흐르는 의령천을 고향의 강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힐링로드 조성, 인도교 설치 및 수목식재 등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과 어우러져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당
(055)211-4236

양산 석계2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 8월 중 127개 필지 분양, 양산~울산~부산 동남권 산업벨트 구축

경남도는 양산시 일원에 민관합동개발방식(양산시 외 3개사)으로 추진 중인 양산 석계2 일반산업단지를 8월 중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산업용지는 443,557㎡에 127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며, 지원시설용지 4필지, 주차장 5필지 등 32,253㎡이다.

도는 양산 석계2 일반산업단지 분양으로 양산~울산~부산(삼산)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산업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양산시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면 8월 중순부터 분양한다.

도에서는 이번 분양으로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2,137억원, 고용유발효과 1,45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지역 내 생산효과 1조 6,556억 원, 고용효과는 2,586명에 이를 것 전망하고 있다.

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오염물질 과다 배출 업종과 섬유제품 제조업의 표백 및 염색공정을 제외하고, 도금과 도장 공정은 50% 이상 제한하였다.

또한 학교 인근 산업시설용지에는 소음이 적은 업종 위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예산 180억 원을 지원받아 2017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올해는 1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도에서는 진입도로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낮은 산업단지 분양가로 인해 입주업체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빠른 시일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대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석계2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관리팀당
(055)211-4252

경남도, 행복주택 첫 삽 뜬다

- ▶ 김해 진영지구 A-2블럭 행복주택 480세대 착공
-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 주거불안 해소 기대

경남도는 경남지역 최초의 행복주택으로 선정된 김해 진영지구 A-2블럭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오는 31일 착공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김해 진영지구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984번지 12,017㎡에 연면적 26,695㎡, 3동, 480세대로 계획하여 201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31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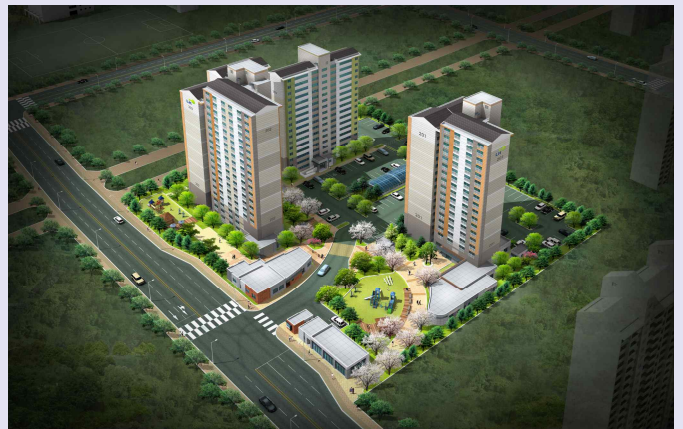
행복주택사업은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이라는 목표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도시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에는 이번에 착공하는 김해 진영지구를 포함하여 총 8개 지구 4,506호가 선정되어 있다.

또한, 진주 혁신지구 A-3블럭 966세대, 양산 물금2지구 900세대 등이 지난 6월 30일 사업승인을 얻어 연말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지난 8월 6일 선정된 창원 진해석동지구 등 5개 지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등 경남도내 행복주택공급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도시근로자 등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행복주택 보급이 확산되면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의 주거비와 사회적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통하여 산업활동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 개발

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젊은 층의 주거 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이 우리 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앞으로도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경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팀당
(055)211-4333

경남도-한국도로공사 '상생협력 협약' 체결

▶ 도로 인프라 확충, 청년창업, 농산물 직거래, 태양광 발전사업 등 협력

경남도(도지사 홍준표)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양 기관의 상생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2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의 협력사업에는 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청년창업매장 추진,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휴게소 태양광발전사업 등 6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중, 지역 산업 발전기반인 '고속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및 창녕~현풍 간 고속도로 확장(대합IC 설치)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도내 물류·테마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이패스 IC를 2017년까지 전국 15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기 설치된 양산 통도사 하이패스 IC와 더불어 지역 물류·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휴게소 내 '청년 창업매장'을 대폭 늘린다. 도로공사는 올해 전국 휴게소 78곳에 100개의 청년창업매장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는 현재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16개 매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청년 창업매장은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들이 대상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휴게소를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남에는 현재 10개소의 농·특산장이 운영 중이며, 진주와 진영휴게소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역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객들에게는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특판장의 이름을 '행복장터'로 정하였다.

이외에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소 내 가용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5년 전국 50개 휴게소 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있으며, 발전량이 약 12,000kw에 이른다. 경남에는 함안휴게소(부산방향)에 설치되어 있으며, 고성휴게소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에너지 위기 및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 전력난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홍준표 지사는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상생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긍정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활용하여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2964

경남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전국최다 우수사례 선정

- ▶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평가 3개 분야 4개 지역 우수사례로 선정, 국비 인센티브 12억원 확보

경남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평가'에서 3개 분야 4개 지역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분야에서 경남도와 포괄보조사업 분야의 거창군과 합천군, 함안군 등 3개 군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분야는 경남도를 포함한 3개 시도, 포괄보조사업은 6개 시군, 내역사업은 15개 시군구가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은 3억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므로 경남도는 전체 12억 원내외의 인센티브가 예상되어 지역발전 사업에 추가 국비 확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4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은 27일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시상식에는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거창·합천·함안군 군수가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하였다.

28일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이해와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윤주각 경남도 한방향노화산업과장은 "지역발전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실과 및 시군 담당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향후에도 시군과의 협조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평가에 대응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한방향노화산업과 행복생활권담당
(055)211-6164

경남도, 건축 재능기부로 희망을 더한다.

▶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자활기반구축과 기부문화 확산 기대

경남도와 LH공사, 주택건설업체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 장애인, 다문화 3가정을 대상으로 집수리 재능기부를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주택건설업체는 창원 소재 (주)덕산종합건설, 덕진종합건설(주), (주)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다.

지원사항은 경남도는 대상자 선정등과 관련한 행정지원, 참여기업에서는 각 가정 당 3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도배, 장판, 설비, 창호, 전기 등의 교체 등 전반적인 집수리, LH공사는 가정 당 3백만원 상당 가전제품이다.

재능기부단은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조손 가정의 경우 습기로 집 내부에 곰팡이가 끼고 누수가 있었으나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집수리는 생각지도 못했으나 건축기부를 통해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어 노부부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함께 손녀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창원 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장애인 가정은 노모와 장애인인 딸이 함께 거주하는데 문짝 등의 노후로 겨울철 난방불량, 곰팡이 발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반적인 집수리로 새로운 자활의지를 돌구어 주었다. 이밖에도, 일본인 엄마를 두고 고3, 고1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진주시의 다문화가정에 화장실 실내설치, 입식 부엌설치,

자녀방을 만들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경남도에서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통한 자활기반 구축과 생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민간 건축 재능 기부에 의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9가정에 대한 집수리를 완료하였다.”며, “앞으로 사회취약계층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민간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O55)211-4313

새 우편번호 건물번호판에서 확인하세요.

- ▶ 8월 1일부터 새 우편번호 시행
- ▶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국가기초구역번호 스티커로 새 우편번호 확인

경남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6자리 숫자에서 국가기초구역번호인 5자리 숫자의 새 우편번호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며, 국가기초구역이란 국가를 지형지물, 인구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국토를 최소 단위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우리 도는 함양군(50000~50099)부터 시작하여 거제시(53200~53399)로 끝난다.

이에 도는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 앞 출입구의 건물번호판에 국가기초구역번호(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하여 누구나 자기 집의 새 우편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는 국가기초구역을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되어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를 동시에 홍보하고 있으며, 새 우편번호 스티커 부착 사업도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하여 완료하였다.

새 우편번호는 건물번호판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055)211-4455

거제, 학동케이블카 착공

- ▶ 1,000만 관광객 유치 디딤돌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는 8월 31일(월) 동부면 구천리 평지마을 일원에서 김한표 국회의원과 주한 스위스대사관,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 학동케이블카 착공식을 개최했다.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투자협약체결 이후 2014년 2월 24일 거제학동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표고제한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하여 산림청,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계기관을 50여회 출장하여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는 등 케이블카설치를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 착공한 거제 학동 케이블카는 201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420억원이 투입된다. 학동고개와 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총연장(경사거리) 1.93km로 곤돌라 8인승 52대가 운행하여 시간당 2,000명, 일일 18,000명을 수송하게 된다.

이 규모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연간 100만 명이상의 이용객이 거제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제시의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은 “오늘 착공하는 학동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오는 10월 착공되는 한화리조트, 지심도이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거제 팜빌리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며,

“거제시는 조선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피력했다.



■ 자료 :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055)639-3214

8월부터 2년 간 콘크리트펌프 신규 등록 제한

▶ 덤프트럭 등 공급과잉 해소 위해...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제한하는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09. 8. 1일 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17. 7.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되,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15. 8. 1일 부터 '17. 7. 31일까지 2년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건설기계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 '14. 10 ~ '15. 6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결과, 굴삭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크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제외했다.

○ 콘크리트펌프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편, 굴삭기에 대하여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 ▶ 건축·토지거래 불편해소 기대
-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 * 지난 10년간 전국 지정된 하천예정지(65천필지, 29,727천㎡)의 95%가 효력상실
-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이와 관련, 강릉시의 ○○○천변 하천예정지를 소유한 ○○○씨는, “그동안 내 땅임에도 건물도 못올리고 거래도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21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으로 입찰 불이익 처분 해제
-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15.8.14일자로 해제된다.
- 금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 건설분야에 대한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 당해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14년 기준 37.9%)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적극 고려되었다.

□ 금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 '15.8.13.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되며
-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되,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 다만, 금번 특별조치에서는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금번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된다.

○ 이는 그간의 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며

- 특히, 누적수주 7천억불 돌파 등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도 적극 고려하였다.

○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감안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 1)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 2)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 3)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며,

-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금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하며,

○ 수혜 대상은 가집계 결과, 업체는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

- 정부는 금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 금품수수,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 우리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지원과
(044)201-3508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18.6.30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18.6.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 km²)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달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km²)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8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8.28(금)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을 신청자가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바닥충격음 측정방법 >

뱅머신 단일 측정 : '05.7.1 ~ '14.5.6



임팩트볼 추가 도입 : '14.5.7 ~



○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뱅머신 방식에 비하여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력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어 '14.5.7부터 시행**하였으나,

* 뱅머신(약 420kg), 임팩트볼(150~180kg), 실제 어린이 뛰기(100~250kg)

** 일본에서는 '00년 JIS 승인을 통해 임팩트볼을 충격원으로 채택, 국내에서는 '12.12월 KS 기준에 반영하고, '14.5.7일부터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으로 적용

○ 임팩트볼 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등 성능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우선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임팩트볼 방식에 맞는 성능기준을 재점검한 후 임팩트볼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 바닥충격음 측정 충격원에서 임팩트볼을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은 임팩트볼 방식 도입 이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의견수렴 결과 실제 충격력과 유사한 임팩트볼 방식이 바람직하나 성능기준 등 보완 필요

□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7월 21일(화)에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사전승인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국토부 운영기준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위와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

- 그런데,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에 일조기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은 경우 A대지만 해당되는지, B대지도 해당되는지 혼선이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상이하야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하여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할 것이며,

○ 특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적극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5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규모로 빠르게 추진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고, 그동안 사업의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생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간소화 된다.
-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 또한,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선효과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기간 약 2~3년 단축 가능

* 재정비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소유자 동의+ 재생시행계획 동시 추진 시 1년 6개월만에 착공 가능

②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하였다.
- 또한,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 전주, 대구)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③ 인센티브 강화

-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④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준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9

국토부, 건축물정보 활용 신산업 창출에 불을 지핀다.

▶ 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2월 민간에 전격 개방한 2.8억건의 건축물정보가 신산업 창출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건축물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내용으로 수익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개방한 건축물정보와 건축물 외 가능한 다른 정보와의 융합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공모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 및 지적재산권은 모두 제안자에게 귀속된다.

○ 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당선작에 대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등에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력·지원함으로써 건축물정보를 활용한 수익사업화모델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접수기간은 8월 17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로 공모부문은 건축물정보를 활용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건축물정보만을 활용하거나 건축물정보와 다른 정보를 융합한 내용을 포함해서 신규서비스 또는 기존서비스를 융합한 응모가 모두 가능하다.

○ 공모형식은 모바일, 웹 기반을 포함한 모든 정보기술로 표현이 가능하며, 건축물정보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으

로 참가도 가능하며 한 팀당 응모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 참가자는 건축물정보 민간개방시스템 홈페이지(open.eais.go.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E-메일(app@appcomm.co.kr)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된 작품 중 10~20개의 비즈니스모델을 선정(9월 14~15일)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정보의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기술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내용의 설명회(9월 16~18일)를 개최하고,
- 2개월(9.21~11.20) 동안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및 서비스를 구현하고 실제 사업을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 작품을 선정하여 12월 초에 열리는 건축물정보 활용 정책포럼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 최종 당선작은 총 10편을 선정하여 선정된 10편 모두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이상을 포상하며, 대상 1편 300만원, 최우수상 1편 200만원, 우수상 1편 100만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종 선정된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는 건축물정보 뿐만 아니라 타 부처 개방 정보의 활용방법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수익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정보 민간개방 홈페이지(open.eais.go.kr)와 전화(02-2264-8355) 및 E-메일(app@appcomm.co.kr)도 가능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협약을 도입하고,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사고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관련 면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다. 측량 및 지반조사 수행 시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안 제74조제3항 신설)
- 라. 발주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 마.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완료 기한을 규정(안 제83조)
- 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안 제88조)
-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98조)
- 아. 건설현장의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안 제99조)
- 자.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03조의2 신설)
- 차. 법 제62조제1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3조의3 신설)
- 카. 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5조)
- 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7조의2 신설)
- 파. 건설사고 발생 시 관련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는 근거 마련(안 별표 1)
- 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 중인 기술인력·자본금 등을 인정(안 별표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설정하며, 시공자가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안 제40조제1항제1호)
-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매년 3월 말일까지에서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로 조정(안 제44조제6항)
- 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점검자를 공무원에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확대(안 제48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안 제48조제7항 신설)
- 마.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안 제60조)
- 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건설사고조사의 절차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62조)
- 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설치 규모를 완화(안 별표 5)
- 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영계획을 추가하고, 굴착공사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7)
- 자. 설계용역 평가표의 배점 오류를 수정(안 별지 제34호서식)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도로상 작업구(맨홀)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1989.3.20)」 이후 변화된 도로의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 적용대상 확대 및 관리책임 명확화(안 제4조)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 포장 유지관리를 담당하되,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담당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6조)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업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8조)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작업구의 정비기준 마련(안 제10조)

포장면 단차, 진동 및 소음, 도로포장면 손상, 작업구 파손 및 이탈 등 정비기준을 마련함

마. 작업구 정비공사 비용 등(안 제11조)

작업구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청구, 납부, 정산절차를 정함

바. 안전관리 및 시행(안 제13조)

작업구의 설치, 이전, 정비공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전시시설 포함(안 제2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복합 시설의 계획적 설치가 기대됨

나.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고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MICE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이에 따라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 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을 연장하며, 주택 청약 시 입주금 중 중도금 상한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바목, 제25조제3항제6호, 제47조제6항, 제54조 및 55조)
- 나.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마목, 제25조제3항제5호, 제47조제5항, 제54조 및 55조)
- 다.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일정 연장에 따라, 공공기관 특별공급 시한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함(안 제47조제3항제2호)
- 라.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상한액기준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이나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 등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제73조제3항, 제5항, 제76조제1항제8호나목)
- 바. 규칙의 목적 중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의 위임조항을 보완하고(제1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서 누락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2항8호나목,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5항, 제8조, 제15조제3항, 제30조, 제35조제8호, 제57조제4항 및 제5항)

신기술 정보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 (Disk Connector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	-------------------------

2.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제 768 호
- 명 칭 :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
- 기술분야 : 건설>말뚝
- 내용요약

(1) 범위

경량의 원형체결판과 강관말뚝 천공부를 관통하는 L 자형 철근을 조립하여 무용접 무볼트 개념의 단순 시공 말뚝머리를 일체화하는 말뚝머리보강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체결판과 방사상으로 조립된 L 자형 철근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으로, 작업공정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원형체결판을 활용하여 급속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용접, 볼트조립 등의 복잡한 설치공정을 배제하고 가공된 철근을 삽입하는 손쉽고 시공이 빠른 공법이다

○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공법 (BIB거더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지승건설턴트 외 4개사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774호
- 명 칭 :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 기술분야 : 건설>교량 설계 및 구조

○ 내용요약

(1)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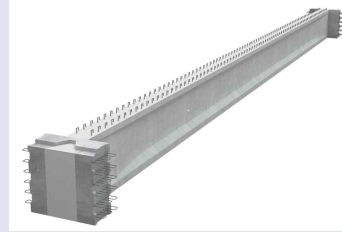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으로, 교대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 시 공과 포장부에 신축조절장치(CCJ)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 건설신기술 774호의 특징

①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



② 신축이음장치, 교대의 흠벽을 제거한 교대구조의 최적화



③ 반일체식 교량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5년 제7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2건
- 심의일자 : 2015. 8. 28.(금)

의안번호	발주청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심의의결)
2015-07-01	사천시 (도로과)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실시설계) 사업개요 : 삭도설치 2.43km, 524억 원	조건부 채택
2015-07-02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	산청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실시설계) 사업개요 : 송수·배수·급수관로 77.17km, 152억 원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8월	계		23	29,414	27,878	1,536	5.22%
	공사	토목	8	17,826	16,982	844	4.73%
		건축	4	2,839	2,666	173	6.09%
		기타	-	-	-	-	-
	용역		6	8,337	7,822	515	6.18%
	물품		5	412	408	4	0.97%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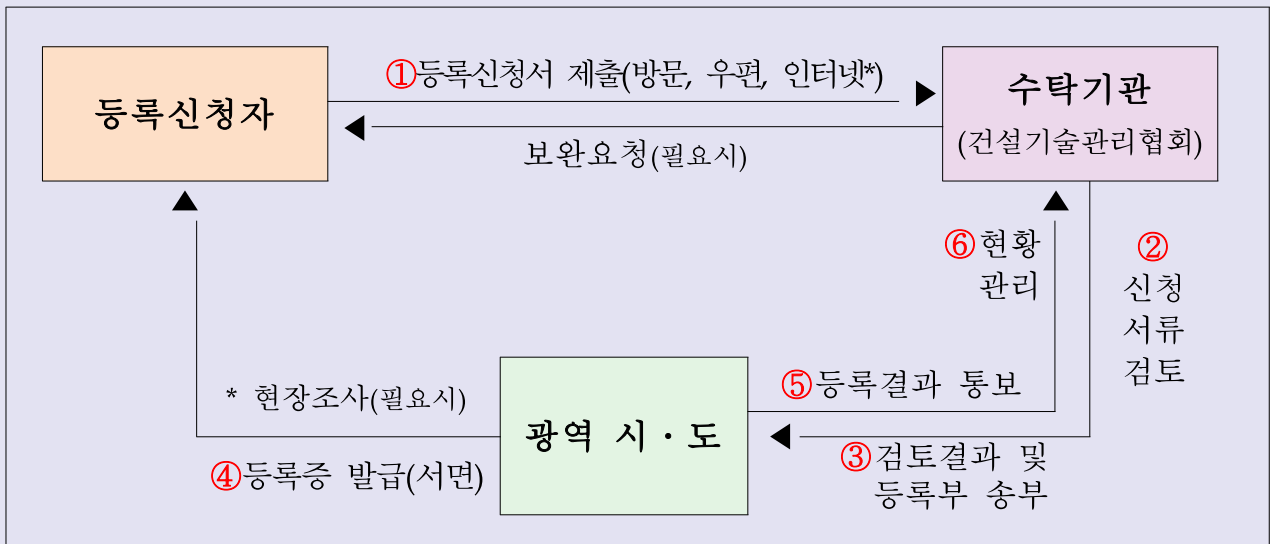
2015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5회	1.9 ~ 1.16	2.1	3.27	3.30 ~ 4.8	4.25 ~ 5.4	5.22
					3.30 ~ 4.2		
	제106회	4.10 ~ 4.16	5.10	6.19	6.22 ~ 7.1	7.25 ~ 8.3	8.21
					6.22 ~ 6.25		
	제107회	7.3 ~ 7.9	8.1	9.18	9.21 ~ 10.02	10.17 ~ 10.26	11.13
					9.21 ~ 10.26		
기사 (산업기사)	제1회	1.30 ~ 2.5	3.8	3.20	3.23 ~ 4.1	4.18 ~ 5.1	5.8
	제2회	4.24 ~ 4.30	5.31	6.12	6.15 ~ 6.24	7.11 ~ 7.24	7.31
	제3회	7.24 ~ 7.30	8.16	8.28	8.31 ~ 9.9	10.3 ~ 10.16	10.23
	제4회	8.21 ~ 8.27	9.19	10.8	10.12 ~ 10.21	11.7 ~ 11.20	12.18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kyr4874@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